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등의 사용 금지〉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69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6. 26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음.

그러나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같이 법적신분증으로 인정되며,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부정사용을 제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사용하여 신분을 도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 제재가 필요함.

이에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

항 및 제14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운전면허증의 복사본(이하 “운전면허증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1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u>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u><신설></u>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49조의2(벌칙) <u>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다음 세 가지 경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첫째, 2024. 9. 20.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85조제6항에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둘째, 같은 법은 제92조제3항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셋째, 「형법」은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운전면허증의 부정행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 세 경우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모두 동일함.

그런데,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의 실물이 아닌 복사본 또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이 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사용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의 생성과 유통이 점차 간편해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권법」이 시행되었고, 「주민등록법」은 시행 예정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²⁾.

다만 법정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행위의 법정형과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 ~ 7의2. (생략)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 10. (생략)

② (생략)

[시행일: 2024. 12. 27.] 제37조

2) 「여권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시행일: 2024. 8. 14.] 제16조

참고로 경찰청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운전면허증의 역할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통해 신분증의 보안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유사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5